

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모집공고

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.

□ **공모직위** : 상임이사 3명

공모직위	인원	주요직무
산재보상이사	1	· 산재보상·요양·급여·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· 산재보험 및 산재재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· 부정수급 방지 및 소관 연구소 운영 총괄
디지털보험관리이사	1	· 고용·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, 가입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· 보험료 부과 징수를 통한 고용·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· 정보화 전략 및 사업 운영, IT인프라 운영 총괄
의료복지이사	1	· 공단의 의료사업 및 직영병원 관리에 관한 사항 · 퇴직연금 사업 등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·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- ※ 임용기간 중 상임이사의 수행업무 조정 등에 따라 임용직위가 변경될 수 있음
- ※ 공모직위 간 중복지원 불가

□ **임명기간** : 2년(최초임기 만료 후 1년 단위 연임 가능)

□ **자격요건**

포괄적 자격요건			○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○ 리더십,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○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○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
필수요건			○ 공단 정관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구체적 요건	학력 기준		○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○ 석사학위 이하인 자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
	경력 기준	공무원	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민간경력	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실적 기준		○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

- ※ 구체적요건은 학력기준, 경력기준,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
- ※ 민간경력은 산하단체, 대학(전문대학 포함), 민간기업(비상장 포함), 시민단체, 개인활동 경력(프리랜서 등)을 포함
- ※ 관련분야라 함은 노동·산업관련 복지, 행정, 경영, 조직, 인사관리 및 의료사업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

□ 제출서류

-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(소정양식) 각 1부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- 경력증명서·최종학력증명서(석·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)·학위 논문 요약서(10쪽 이내) 각 1부
- 구체적 자격요건 중 실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실적 증빙자료 제출
 - ※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, 고용노동부, 공공기관 알리오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재정경제부, 성평등가족부 등에서 내려 받아 작성

□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: 2026. 9. 30.(수) ~ 10. 14.(수) 14:00
- 접수장소: (우: 44428)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7층 인재기획부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 - ※ 마감일 14:00까지 공단 인재기획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, 토·일요일(공휴일 포함)에는 접수 불가

□ 심사절차 및 방법

- 서류심사: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·평가
- 면접심사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
 - ※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

□ 보수

- 「보수규정」 등 공단 내규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지급

□ 기타 유의사항

- 공모직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중복지원시 지원직위 모두 탈락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(반환청구서 작성) 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(인재기획부, 052-704-7073, 70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30일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